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 환경제도

## 1.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2-2110-6920)

2008년 8월부터 수출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1994년부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입되는 유해폐기물에 대하여 수출입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86개 품목에 수출입시 지방·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출입 허가대상 품목이 아닌 일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였다. 수입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기준을 국내 사업장폐기물에 준하도록 하고 전자 인계·인수서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수입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할 수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명문화하였다.

### <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수출입 허가대상이 아닌 폐기물에 대한 관리강화 및 수입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제도 정비
- 주요내용
  - ① 수출입 허가대상 품목 외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신고제 도입
  - ② 수입폐기물의 자기처리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의 위탁처리 의무화
  - ③ 수입폐기물의 국내 운반·처리시 전자인계·인수서 작성 의무화
  - ④ 수입폐기물을 정상상태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
- 시행일 : 2008.8.4

## 2. 자연환경지구내 상업시설 입지 거리제한 폐지

환경부 자연자원과 (☎ 02-2110-6753)

2008.9.22일부터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서의 행위기준이 변

경된다. 공원자연환경지구안에 기념품판매점·약국·식품접객업소(유홍주점 제외)·미용업소·목욕장·유기장 등의 상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 상호간에 1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이격거리와 관계없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 시행

환경부 환경전략실(☎ 02-2110-6724)

환경오염 다양화에 따라 측정분석결과가 환경정책 수립의 자료와 배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근거자료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정확한 분석을 위해 마련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환경기술자격이 매체별 환경관리에 중점을 두고 측정·분석 능력은 환경관리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측정·분석능력 전반에 대한 평가를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검정분야는 가장 수요가 높은 대기환경측정분석 및 수질환경측정분석 2종류만 실시하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정도관리에 대한 필기시험과 중금속·유기물질 분석 등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아울러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환경측정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도 검정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

### < 환경측정 분석사 제도의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환경측정분석분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화된 시험분석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으로 환경측정분석사가 필요
- 주요내용
  - ① 환경측정 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종류
  - ②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 ③ 환경측정 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지정
- 시행일
  - \* 2008.10.4(환경분야시험·검사에관한법률은 2007.10.4일 시행되었으나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는 2008.10.4일 시행됨)

신·구대비표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시행일)
			관계 부서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입 허가대상 품목 외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신고제 도입</li> <li>수입폐기물의 자가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의 위탁처리 의무화</li> <li>수입폐기물의 국내 운반?처리시 전자인계·인수서 작성 의무화</li> <li>수입폐기물을 정상그대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li> </ul> <p>※ <a href="http://www.me.go.kr">http://www.me.go.kr</a>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마당 입법예고(제2006-265호, 2006.9.21)</p>	<p>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제24조의3 (2008.8.4)</p> <p>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20)</p>
공원자연환경 지구내 상업시설 입지 거리제한 규정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원자연환경지구안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중 상업시설(유흥주점 제외)은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과의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입지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지제한 거리규정 폐지</li> </ul>	<p>자연공원법 시행령 (2008.9.22)</p> <p>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753)</p>
일회용품 규제개선 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억제품목 - 1회용컵(종이컵·합성수지컵·금속박컵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사용억제 품목 중 1회용 종이컵은 사용이 가능</li> <li>※ 합성수지컵·금속박컵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규제대상임</li> </ul>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008.7.1.예정)</p>
② 식품제조·가공업,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 - 대규모 점포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③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억제품목 -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용에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li> <li>사용억제품목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하여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는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가능</li> <li>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등에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 가능</li> </ul>	<p>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17)</p>
④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규모점포, 도·소매업소에서 종이쇼핑백은 사용가능</li> <li>※ 종이쇼핑백 이외 1회용 봉투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규제대상임</li> <li>※ <a href="http://www.me.go.kr">www.me.go.kr</a>(환경부 홈페이지 법령마당)</li> </ul>	
폐기물 종이 인계서를 전자인계서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장 일반폐기물 인계인수시 종이인계서 사용</li> <li>운반중 종이인계서 휴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장 일반폐기물 인계인수시 전자인계서 사용</li> <li>의료폐기물은 전자태크 사용</li> <li>운반중 인계번호 휴대 <a href="http://www.allbaro.or.kr">www.allbaro.or.kr</a></li> </ul>	<p>폐기물관리법 (2008.8.4)</p> <p>환경부 산업폐기물과 (02-2110-6936)</p>

**정 책**

	종 전	달리지는 내용	관련 법규(시행일)
			관계 부서
폐석면 관리제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면의 제조·가공 시 또는 공작물·건축물의 제거 시 발생하는 것(슬레이트 등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뿔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것</li> </ul>	폐기물관리법 (2008.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리방법은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기존대로 처리</li> <li>○ 나머지는 지정폐기물매립장에 매립</li> </ul> <p>※ www.me.go.kr(환경부 홈페이지 법령마당)</p>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02-2110-694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예치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 및 재활용 신고는 영업시작전까지 다음 각호 중 하나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함</li> <li>-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li> <li>- 폐기물 처리 보증보험 가입</li> <li>-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예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 및 재활용 신고는 영업시작전까지 다음 각호 중 하나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함</li> <li>-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li> <li>- 폐기물 처리 보증보험 가입</li> </ul> <p>※ www.me.go.kr(환경부 홈페이지 법령마당)</p>	폐기물관리법 (2008.8.4)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02-2110-6946)
석분토 보관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석허가를 받은 석산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석분토는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적지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석분토는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있음</li> </ul> <p>※ www.me.go.kr(환경부 홈페이지 법령마당)</p>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08. 8.4예정)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02-2110-6941)
재활용 신고자에 대한 준수 사항, 행정 처분, 과징금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신고자에 대해서는 준수사항,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제도가 없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을 재활용 할 때 지켜야할 주요 내용(준수사항)이 폐기물관리법에 명문화 됨</li> <li>- 계약서 작성 의무, 채위탁 금지, 처리기간 준수, 폐기물 차량 이용, 재활용신고증명서 대여 금지, 허용보관량 초과금지, 휴·폐업 시 수집·운반중 반납, 장부의 기록·보존, 보고서 제출 등</li> <li>○ 재활용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의 부과 가능해짐</li> <li>- 경고, 사업정지(재활용금지) 1월, 2월, 3월, 6월, 재활용시설폐쇄 등</li> <li>○ 재활용신고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가능해짐</li> <li>-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li> </ul> <p>※ www.me.go.kr(환경부 홈페이지 법령마당)</p>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8.8.4)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시행일)
			관계 부서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 허가대상 품목 외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신고제 도입</li> <li>○ 수입폐기물의 자기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의 위탁처리 의무화</li> <li>○ 수입폐기물의 국내 운반·처리시 전자인계·인수서 작성 의무화</li> <li>○ 수입폐기물을 정상그대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li> </ul> <p>※ www.me.go.kr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마당 입법예고(제2006-265호, 2006.9.21)</p>	<p>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제24조의3 (2008.8.4)</p> <hr/> <p>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20)</p>
환경측정 분석사 제도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자격종목 분야 기사 또는 화학 분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자</li> <li>- 환경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li> <li>-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환경 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li> </ul> </li> <li>○ 검정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환경측정분야</li> <li>- 수질환경측정분야</li> </ul> </li> <li>○ 환경측정 검정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재정운영계획서</li> <li>-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li> <li>- 검정시설 및 설비 현황 또는 계획서 등을 확인 후 지정</li> </ul> </li> <li>○ 시행초기에는 수요가 높은 대기와 수질 등 2종류만 실시하고 향후 수요를 고려하여 기타 분야로 확대 실시</li> <li>○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에는 정도관리와 해당분야의 공정시험 기준에 따른 시험·기기분석방법이 포함</li> </ul> </li> </ul>	<p>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 관한법률 (2008.10.04)</p> <hr/> <p>환경부 환경전략실 (02-2110-6724)</p>